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 근거 마련〉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72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수사의 시작·종료를 통보를 받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 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 현행법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수사의 개시 및 종료 통보를 받도록 규정¹⁾하고 있으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있는 등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일부 범죄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²⁾되면서, 군인의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가 군 내부 기관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 양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필요성이 생긴 상황임.

-
- 1) 「군인사법」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 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 한편, 유사한 입법례로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³⁾ 및 「지방공무원법」⁴⁾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해서도 수사·조사자료에 근거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수사 종료 후 징계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국방부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일부 범죄의 수사관할이 민간수사기관에 이관되어 징계절차 진행을 위하여 민간수사기관

-
-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 4)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의 자료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적절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